

2026년 국립마산병원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및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마산병원에서는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및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원)	1	정년 적용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 소방 및 안전관리 업무 -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경남 창원시)
기간제근로자 (연구원)	1	'26. 11. 30.~ '27. 8. 29. (육아휴직 대체)	- 결핵균 분자 생물학 연구 - 인체 유래 폐오가노이드 구축 -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 시험 - 결핵 검체 은행 연구 지원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 (경남 창원시)

2 근거 법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근로기준법 등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2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제 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시설관리원) 65세 / (연구원) 60세

나. 응시자격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7.)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 시설관리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소방, 통신,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조경, 전자, 에너지관리, 승강기, 위험물 등
기간제근로자(연구원)	-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물(공)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등 관련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10.27.) 기준, 응시자 5배수 초과일 경우 서류전형에서만 인정]

●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등급별 차등) * 전기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관련기술사 (중복 시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 응시자격 충족 후 관련 직무 분야 3년 이상의 근무 경력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확실할 경우 불인정)
기간제근로자(연구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경력별 차등 우대) - 미생물 및 생물학 관련 분야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 SCI, SCIE, SCOPU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❶ 자격요건 충족(시설관련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후 근무 경력만 인정(시설관리원의 경우 3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인정, 연구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 경력) ❷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❸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❹ 강의 경력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 (가산점) 법정가점 대상자(증빙자료 첨부 필수)

- 서류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가산)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중복 가점 불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❶ 가산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산점 항목별로 중복 가산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만을 적용함) ❷ 법정가산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시험 방법

가. 1차심사: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선발 인원) 채용인원의 5배수 면접대상자 선발
* 1차서류전형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 대비 5배수 이하 시 소극적 서류전형을 실시(응시자격 요건 부합 여부만 판단)
 -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5명 초과) 적극적 서류 전형을 통해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 (동점자 처리)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하며,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2차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① 공무수행을 위한 정신자세, ②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태도, 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채용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7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평정된 자 중 예비합격자(2배수) 결정 가능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결정 ② 면접심사 재진행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제척사유 :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근무경험관계, 교우, 동료관계,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0. 16.(금) ~10. 27.(화)	'26. 10. 23.(금) ~10. 27.(화)	'26. 11. 6.(금)	'26. 11. 17.(화)	'26. 11. 23.(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6. 10. 23.(금) ~ 10. 27.(화) 09:00~18:00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주소: (우)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총무팀) 채용담당자
 - (방문접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출입문 GATE2 이용, 건물 2층)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나.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1]	○ 제출사항 기재
	응시원서 1부 [별지 2]	○ 자필 기재
	이력서 1부 [별지 3-1,2]	○ 자필 서명 필수(시설 3-1, 연구 3-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	○ A4 2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	○ A4 2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7]	○ 자필 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8]	○ 자필 서명 필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9]	○ 자필 서명 필수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별지 10]	○ 자필 서명 필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11]	○ 자필 서명 필수
	확인서 [별지 12]	○ 자필 서명 필수
	(연구) 대학교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전형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 전공분야(학과, 학위 등) 표시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자참 가능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 '시설관리원' 지원 시 필수 제출 사항 ○ 원서접수 시 복사본 동봉 / 면접시험 시 원본 자참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시 복사본 동봉 / 면접시험 시 원본 자참
	'우대요건' 연구 실적 [별지 6]	○ 자필 서명 필수 ○ 연구 실적 작성 ○ 논문 사본 동봉 * SCI, SCIE, SCOPU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이력서에서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①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

구분	서류	비고
		분장 내역 등), ②폐업사실증명서 ③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소득금액 증명서 제출 (①~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 불인정 * 강의 경력 제외 /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 지원자격요건 충족(시설관련 자격증, 석사 학위) 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만 인정
	(시설) 학위증명서 1부	○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전형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eb0128@korea.kr)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채용예정일: 2026. 11. 3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시설관리원) 기한의 정함이 없음(정년 65세)
- (연구원) '26. 11. 30.~'27. 8. 29. (9개월 /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연장) 가능)
-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사용기간을 두며, 부서평가 및 결격사유 유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채용분야	근무시간
시설관리원 연구원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일정, 휴무일수 및 휴게시간은 병원 운영 여건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채용분야	기본급	수당(기본급 외)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2,139,000원	○ 공통수당 -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 위험수당: 월 50,000원 - 특수지근무수당: 월 40,000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 설, 추석(2회) 지급 - 복지포인트: 연 500,000원 * 당해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기간제근로자(연구원)	2,782,000원	○ 직종별 수당 - (시설) 자격수당: 월 50,000원 - (연구) 성과급(상) 1,000,000원(중) 900,000원(하) 800,000원(초하) 미지급

8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위반한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즉시발급 증명 → (1번) 폐업사실증명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즉시발급 증명 → (2번)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8)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분야
※ 담당자 기재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별지1호]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2	[별지2호] 응시원서		
3	[별지3-1, 2호] 이력서		
4	[별지4호] 자기소개서		
5	[별지5호] 직무수행계획서		
6	[별지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별지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8	[별지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9	[별지10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0	[별지11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1	[별지12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2	[별지13호] 확인서		
13	(시설)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4	(연구)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15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발급)		
16	[별지6호] (연구) '우대요건' 연구(논문)실적 및 논문 사본 1부		
17	(공통)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18	(시설)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9	(시설)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1부		
20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편철**, 제출유무란에 “O” 표시 한 후 **가장 앞면에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텝플러 사용 금지)

성명

(서명)

응시원서 (원본)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본인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원서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국립마산병원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20 년 월 일			
국립마산병원장 ㉞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이력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2.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공무원 근로자(시설관리원) 기간제근로자(연구원) 中 택1
- ③ 응시자격요건: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의 응시자격 작성
- ④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응시자격 】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일·면허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전공 · 학위종류 · 취득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충족 후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력 등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관련 경력만 인정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연구원)의 경우 응시자격(석사 학위 취득) 충족 후 근무 경력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연구논문 기재
 - 등재구분 : SCI, SCIE, SCOPUS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1저자/2인)
 - 연구실적(별지6) 및 논문 사본 별도 첨부

이력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성명	
----------	-----------------	----------	--	----	--

시설관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

근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예) 16. 5. 1.~12. 31		시설관리원		전일/비전일 (주 00시간 근무)
자기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	

20 년 월 일

성명 : (인)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
- 1. ① 본인이 임용예정직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②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있는 경력·실적
 -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2. 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로 작성합니다.(한글(워드프로세서) 사용 시: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13포인트), 줄간격(160%), 글자색(검정))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응시자: (인 또는 서명)

※ 작성 후 작성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꼭 확인할 것

연구실적

□ 연구논문 : 건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에 한함)

연번	제목	연구자 (참여자수,역할)	게재지명 (권,호)	발표(게재) 연월일	인터넷 확인 가능 URL 주소	비고
작성 요령						

- 1. 연구자 : 논문에 기재된 참여자 인원수와 본인의 역할을 기재
 - (예시) 1인, 2인(주저자), 2인(제2저자), 3인(교정저자), 교신저자 등
- 2. 게재지명 : 논문을 게재한 저널지명을 기재(저널명, 권, 호, 발행연월일)
- 3. 비고에 SCI, SCIE, SCOPUS 등재 논문 해당 여부 기재(외국어의 경우 초록번역본 제출)
- 4. 증빙자료 별도 첨부
 - 논문 사본(확인용) 1부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u>	공무직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직 채용 관리	<u>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N	OFF	TH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11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 |
|---|------------------------------|
| <p>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p> <p>*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p> <p>「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 <p>[] 해당</p> <p>[] 비해당</p> |
|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p> <p>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p> <p>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p>* (예시) 비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p> | <p>[] 해당</p> <p>[] 비해당</p> |
|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 <p>[] 해당</p> <p>[] 비해당</p> |
|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 <p>[] 해당</p> <p>[] 비해당</p> |
|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 <p>[] 해당</p> <p>[] 비해당</p> |
|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 <p>[] 해당</p> <p>[] 비해당</p> |
|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 <p>[] 해당</p> <p>[] 비해당</p> |
|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 <p>[] 해당</p> |
|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 <p>[] 해당</p>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100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12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채용기관 (채용담당자 작성)	기관명	채용방법	응시분야
	채용사유		
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 에서 “예” 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

1.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13호>

확 인 서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명

국립마산병원 채용 관련 합격취소 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내 ·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강요 및 청탁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3.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대리 면접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에 응시한 경우
5.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
6. 병역, 가점 등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한 경우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질병관리청 또는 국립마산병원의 채용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것에 서약합니다.

이
의
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소	반환주소(주소와 다른 경우)
반환청구서류	반환 희망 서류 목록 * 필요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마산병원장 귀하

참고 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